

수 신 편집국장 · 보도국장  
참 조 미디어 담당기자  
발 신 전국언론노동조합 (담당: 김동원 정책국장)

## “2014년보다 후퇴한 종편 재승인 심사, 종편 미디어렐 심사도 형식적”

### 전국언론노동조합, 종편 재승인 심사 및 종편 미디어렐 심사의 문제점 지적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종합편성채널이 개국한 지 6년이 되어가는 지금, 3개사(TV조선, JTBC, 채널A)의 두 번째 재승인 심사가 임박했습니다. 올해의 심사는 2014년 재승인 때와는 달라진 심사 항목과 배점이 적용되며, 종편 3개사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미디어렐)에 대한 첫 번째 재허가 심사가 같은 시기에 진행됩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에서는 종편 재승인과 미디어렐 재허가 심사 방식 및 기준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첨부 문서와 같이 공개합니다.

2.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는 “공적책임 · 공정성 · 공익성 실현 가능성 및 지역 · 사회 · 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 편성 · 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두 항목에서 50% 이하의 점수가 나올 경우 650점이라는 기준과 상관없이 재승인 여부를 재고하겠다는 방통위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심사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2014년 첫 재승인 심사보다 심사위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더 많아졌습니다. 중분류 항목인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의 배점은 20점이 더 낮아졌고, 새롭게 신설된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은 “공익성 관련”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재승인에 불리한 총점을 보완할 ‘보너스 점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2014년 재승인 심사에 포함되었던 “조직, 인력운영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항목이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는 누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인력운영 실적은 종편 내 고용 및 노동조건을 간접적이거나 점검할 수 있는 필수 항목입니다. 이 항목이 삭제되었거나 세부심사항목으로 낮은 배점이 할당되었다면 중요 심사항목의 배제라고 판단됩니다.

4. 70점이라는 높은 배점이 할당된 “(재)승인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 여부 등”에는 2014년 재승인 심사서 TV조선에 권고사항으로 지적된 “편성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확보” 평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편성위원회 운영에 대한 평가에는 단순히 운영 횟수나 간략한 회의 기록만이 자료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 재승인 심사서 부과된 조건이나 권고의 이행 여부에 대해 보다 충실한 심사 자료의 제공이 필요합니다.

5. 방통위가 TV조선에 재승인 권고사항으로 “편성위원회가 일선 기자나 PD 등 실무 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한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편성위원회는 현재 자유한국당의 반대과 무대응으로 국회 미방위에서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입니다. 편성위원회 신설 조항은 이미 편성규약에 의해 방송사 내 자리잡은 논의기구를 사업자의 편의대로 하지 않고 종사자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방통위의 권고 사항을 법제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편성위원회에 대한 반대와 우려는 다분히 여당의 정치적 수사(rhetoric)일 뿐입니다.

6. 종편 미디어렐에 대한 첫 번째 재허가 심사 또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현재 미디어렐 심사항목은 결합판매 평가를 제외한 지상파 미디어렐의 심사항목을 전용한 것입니다. 이런 심사 항목은 2015년 MBN 미디어렐의 불법영업 사례에서 나타난 1사 1렐이라는 종편 미디어렐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법·편법 협찬과 거래에 대한 방지 평가는 미디어렐의 ‘자율규제’ 실적만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심사위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높습니다.

7. 또한 종편의 미디어렐이 정상적인 영업을 위한 적정 규모의 조직과 인력을 갖추었는지, 방송광고 판매대행 수수료를 재원으로 하는 미디어렐의 재정 건전성이 어떠한지를 평가할 심사 항목에는 모호하거나 낮은 배점이 주어졌습니다. 또한 감점 항목인 “시정명령 및 과태료 횡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횡수”는 건당 1점 감점이 적용됩니다. MBN 미디어렐 사례와 같이 2억 4,000만원이라는 과징금과 시정조치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건당 감점을 하는 방식은 심사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이와 달리 가산점을 줄 수 있는 “허가조건 이행여부 및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다양성 기여 정도” 항목에서는 심사위원이 자의적으로 최대 5점까지 부여할 수 있습니다.

8. 위와 같은 검토에 따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종편 재승인 및 종편 미디어렐 재허가 심사를 실시하는 방통위에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중요 심사항목의 누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현재 중분류까지 제시된 종편 재승인 심사항목을 심사위원회에서 세부항목을 확정하는 대로 공개하여 주십시오.

둘째, 첫 번째 재승인 심사에서도 문제로 제기되었던 심사위원의 추천 및 구성 절차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방통위 상임위원의 자의적인 추천을 방지하기 위해 지상파 방송사를 비롯한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방통위의 내부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종편 미디어렐 재허가 심사 또한 종편 광고영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세부심사항목을 공개하여 주십시오.

넷째, 종편 재승인과 종편 미디어렐 재허가 심사 결과를 심사 직후 심사위원별 평가와 점수를 포함한 구체적인 백서로 공개하여 주십시오.

[첨부]

# 2017년 3월 종합편성채널사업자 재승인 및 미디어렙 재허가 심사 검토 의견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실

## 1. 종합편성채널사업자 재승인 심사

2014년 3월 재승인 심사항목과 배점			2017년 3월 재승인 심사항목과 배점			
대분류	중분류	배점	대분류	중분류	배점	
방송평가 (350)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350	방송평가 (400)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400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권익보호 (160)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현	140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210)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120	
	시청자권익보호	70		시청자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70	
	신청법인의 적절성*	20				
	관련법령 위반 사례	감점				
지역사회 발전 기여,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20)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도	20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20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160)	기획·편성의 적절성	70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190)	방송프로그램 기획, 편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90	
	수급의 적절성	50		방송프로그램 수급, 제작, 협력의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80	
	제작·협력의 적절성	40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	20	
재정 및 기술적 능력 (80)	재정적 능력	65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100)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30	
	기술적 능력	15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20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절성 (60)	사업추진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 전략*	30	경영,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50
	조직·인력운영 실적 및 계획의 적절성*	15				
	경영의 투명성, 효율성 확보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1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 및 이행 여부 (30)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30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100)	방송산업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30	
승인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70)	승인시 부여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	70		(재)승인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70	
시정명령의 횡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시정명령의 횡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	감점		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 여부	감점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	감점	
합계		1000			1000	

주1) 볼드체의 배점은 계량 항목

주2) \*표시된 항목은 삭제되었거나 새로 추가된 심사항목

□ 2014년 심사항목 중분류 중 “신청법인의 적절성”, “사업추진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 전략”, “조직, 인력운영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이 삭제됨. 조직, 인력 운영의 실적 및 계획이 세부분류로 하향조정되면서

노동 및 고용 조건 관련 심사 항목이 누락된 것은 아닌지 우려됨.

□ 2017년 심사항목에서는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의 적정성”이 새로 포함되었으나, 이미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이라는 중분류 항목이 있음에도 중복되어 포함된 심사항목으로 판단됨.

□ 주된 계량 평가항목인 방송평가위원회의 평가 비중을 350점에서 400점으로 늘렸으나, 다른 심사항목의 배점 및 삭제·신설 항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1) 약화된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평가

2017년 심사항목 중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은 방통위에서 핵심 심사항목- 50% 이행 미달시 재승인 거부 검토 -에 포함됨에도 2014년보다 20점이 낮아졌고, 신설된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에 20점이 부여됨. 이 신설항목은 핵심 심사항목에 포함되어 있지만, 비계량 항목으로 ‘공익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낮은 총점을 보완하는 ‘보너스 점수’가 될 가능성이 높음.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이란 심사위원별로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에 좌우될 수 있기 때문.

###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 계획 적절성 심사의 완화

또 다른 핵심 심사 항목인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 계획의 적정성”은 2014년 심사 항목보다 자의적 심사의 가능성이 높아짐. 2014년 해당 대분류 항목의 중분류 세 항목은 2014년 중분류 두 항목으로 압축되어 합산 점수가 160점에서 170점으로 늘어났음. 그러나 ‘보너스 점수’가 될 가능성이 높은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으로 인해 50% 과락 점수가 보완될 수 있음.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에서는 방송사가 자체 판단으로 “공익성 관련” 프로그램을 구분하여 기획과 편성 ‘실적’을 평가하고 향후 ‘계획’을 제시한 자료만을 대상으로 심사가 이루어짐. 방송사가 구분한 공익성 관련 프로그램의 기준에 심사위원의 자의적 판단이 더해지면 특정 방송사에 대한 우호적인 심사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

### 3) 조직, 인력운영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심사의 누락 우려

2014년 중분류 심사항목이었던 “조직, 인력운영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이 올해 심사에서는 누락됨. 공개되지 않은 심사 세부분류에 포함되었을 수도 있으나 현재 확인 불가. 종편 사업자들은 신문사 인력을 파견하거나 자회사를 만들어 다시 재파견을 보내는 불안정한 인력의 운영 가능성이 높음. 또한 인력 운영 실적은 종편 방송사 내 고용 및 노동조건을 간접적이거나 점검할 수 있는 필수 항목임에도 누락된 것은 우려되는 지점임. 15점이라는 낮은 배점이라고 해도 4~5점의 차이로 재허가 거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심사항목의 누락으로 판단됨.

### 4) 편성위원회 운영 실효성의 평가 기준 부재

간과할 수 없는 지적은 2014년 재승인 심사에서 방통위는 TV조선에 “편성위원회가 일선 기자나 PD 등 실무 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이라는 권고사항을 적시했음. 이는 방송법에 명시된 “편성규약의 제정”이 보도, 제작, 편성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있는지 점검할 중요한 심사기준이 되어야 함. 또한 실무 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편성위원회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에 사업자-종사자 동수 구성의 편성위원회로 제안되어 있음. 편성위원회 운영에 대한 심사는 “공적책

임, 공정성, 공익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의 세부항목으로 포함되거나 누락된 “조직, 인력운영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에 포함될 수 있던 항목임. “(재)승인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 여부 등” 70점 배점에 해당하는 심사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나 심사위원이 자의로 평가할 수 있는 비계량 항목에 포함되어 있음.

**5) 사전에 정해진 방송평가의 감점 범위와 심사위원의 판단**

400점을 차지하는 방송평가에는 종편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반영됨. 그러나 현재 방송평가에는 “법정제재” 조치만이 반영될 뿐 “행정지도” 조치는 반영되지 않음. 심사 기간 동안 종편 3사의 행정지도 건수는 총 236건에 달함. 심사위원들이 산출된 감점에 대해 정성적 평가를 할 수 있다고 해도 합의에 이르는 불가능함. 또한 재승인 심사항목에 포함된 “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 여부”와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는 건수의 빈도에 따라 감점되는 항목으로 위반한 명령 및 법령의 위중함은 반영되지 않음.

□ 위와 같은 심사항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방통위는 심사기준을 세부분류까지 공개하여 심사의 공정성 의지를 피력하여야 함.

□ 아울러 방통위가 TV조선에 재승인 권고사항으로 “편성위원회가 일선 기자나 PD 등 실무 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편성위원회는 현재 새누리당의 반대과 무대응으로 국회 미방위에서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임. 편성위원회 신설 조항은 이미 편성규약에 의해 방송사 내 자리잡은 논의기구를 사업자의 편의대로 하지 않고 종사자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방통위의 권고 사항을 법제화하는 것임. 따라서 방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편성위원회에 대한 반대와 우려는 다분히 여당의 정치적 수사(rhetoric)일 뿐임.

□ 재승인 심사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사업 계획의 검토에서 아래 두 가지 사항이 확인되어야 함.

**1) 방송발전기금 징수 및 납부 계획 점검**

종편은 ‘후발사업자’로서 보도전문채널과 함께 방송발전기금의 면제를 적용받아 왔음. 종편 4개사는 분담금 징수기준인 방송광고 매출액이 2012년 2,627억 원에서 2015년 3,631억 원으로 2015년 기준 홈쇼핑 사업자 (3,600억 원)와 동일한 수준에 이르렀음. 이에 따라 방통위는 2016년 8월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사업자 분담금 최종징수율에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에 방송광고 매출액 0.5%로 고시함. 이에 따라 “방송산업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항목에서 종편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 계획을 확인해야 함.

<표 4>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내역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SO	389	431	486	505	460	2,271
위성방송사업자	35	37	66	73	74	285
홈쇼핑	500	539	560	687	672	2,958
IPTV	-	-	-	-	67	67
지상파	907	756	759	262	603	3,287
종편	-	0	0	0	0	0
합계	1,831	1,763	1,871	1,527	1,876	8,868

출처: 전파진흥원,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내역 2016년 국정감사 추혜선의원실 제출자료

## 2) 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의 프로그램 사용료 수익

종편은 의무전송채널임에도 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수신료(프로그램 사용료)를 배분받고 있음. 지난 4년 간 종편은 프로그램 사용료 대가로 1,286억 원의 수익을 올렸음. 방송법에서 동일하게 의무전송을 해야 하는 KBS1과 EBS는 별도의 유료방송 수신료 배분을 받지 않다는 점에서 특혜 논란이 계속되어 왔음. 비계량 항목인 “경영·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심사에 있어 현재 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의 프로그램 사용료 수익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검토하여 ‘후발사업자’라는 이유로 묵인되어 왔던 프로그램 사용료 수익의 지속 여부를 질의하여야 함.

## 2. 종합편성채널 미디어랩 심사

심사사항	세부심사항목	배점	심사시 고려사항
방송광고판매계획의 공익성,공정성 이행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35)	방송광고 판매계획의 공익성,공정성 이행 실적 및 계획	20	•금지행위 위반 방지를 위한 내부지침, 업무절차, 모니터링체계, 교육계획, 이용약관 반영내역 등의 구체성 및 준수방안 확보 여부 •공정하고 투명한 광고요금 기준, 이용조건, 수수료 등을 규정한 이용약관 마련 및 준수방안 확보 여부
	방송광고판매시장의 공정거래 질서 실현 실적 및 계획	15	•방송사업자와 방송광고판매대행을 위한 계약서, 약정서 등의 적정성
조직,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및 재정 건전성 (45)	방송광고 판매대행 규모 등에 비추어 적절한 수준의 조직과 인력 운영 실적 및 계획	15	•방송광고 판매대행 규모 등에 비추어 조직,인력 구성의 적정성
	인력운영 등 방송광고 판매의 전문성 확보 여부 및 계획	10	•방송광고 판매계획 실현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인력 운영의 적정성
	경영의 투명성 확보 등 적정한 경영계획의 이행 실적 및 계획	14	•사외이사, 감사제도 등 경영감시기구의 실효성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내부절차 및 업무처리지침 수립 여부 및 적정성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재무구조 건전성 -수익성(총자산 경상이익률) -안정성(부채비율) -성장성(매출액 증가율)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신용평가 등급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의 재무상태 등 재정 건전성	6	•광고 표준화 지원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광고효과 측정을 위한 지원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광고산업 조사,연구를 위한 지원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공익광고의 제작,방영 등 지원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기타 방송통신광고산업 진흥사업 지원계획의 적절성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 이행 실적 및 계획의 적절성 (10)	광고 표준화, 광고효과 측정, 광고 관련 조사연구, 공익광고 제작,방영 등 방송 및 광고산업 진흥 실적 및 이행 계획	10	•방송광고판매시스템 유지 및 개선의 적정성 •방송광고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계획의 적정성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10)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10	•방송광고판매시스템 유지 및 개선의 적정성 •방송광고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계획의 적정성
시정명령 및 과태료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횟수	시정명령 및 과태료 건수별 감점, 시정명령 이행여부 평가	최대 감점 한도 10점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건당 1점 감점 •시정명령 불이행 건당 2점 감점
허가조건 이행여부 및 방송의 공공성,공익성,다양 성 기여 정도	허가 당시 부과한 조건에 대한 이행 실적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입법 취지에 따른 방송의 공공성,공익성,다양성 실현 이행 실적	최대 가점 한도 10점	•허가조건 이행 여부 최대 5점까지 가점 •방송의 공공성,공익성,다양성 이행 실적 최대 5점까지 가점
계			100

주1) 볼드체의 배점은 계량 항목

□ 미디어랩은 각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 총점이 70점 이상을 획득 시 재허가. 지상파 랩과 달리 결합판매 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고시에는 “지상파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을 하도록 고시되지 않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로 구분하여 재허가 심사항목을 규정하고 있음.

□ 2015년 3월 MBN 미디어랩의 영업 일지가 공개되면서 밝혀진 사안들은 종편 미디어랩의 공식/비공식

영업방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음. 방통위 조사 결과 MBN 미디어렐의 실무책임자가 MBN이 주관하는 제작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여 광고 및 협찬과 관련된 진행상황을 논의했음이 밝혀짐. 방통위는 MBN 미디어렐의 광고영업 행위가 “MBN의 프로그램 기획·제작·편성에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광고·협찬 판매 활성화라는 미디어렐사 본연의 역할과 업무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함. 이에 따라 방통위는 MBN 미디어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4,000만 원을 부과했음.

□ 지상파 방송광고판매대행 사업자와 달리 종편 미디어렐은 사실상 1사 1렐의 직접영업 구조임. 2015년 공개되었던 MBN 미디어렐 영업일지에는 MBN 뿐 아니라 다른 종편 3사개의 광고 영업 방식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음이 드러났음. 방통위 또한 2015년 국정감사에서 TV조선과 채널A의 불법·편법 협찬 의혹에 대한 조사 계획을 밝힌 바 있음. 이는 종편 미디어렐의 영업방식이 지상파 미디어렐과 상이하며, 협찬과 같이 미디어렐을 통하지 않는 수익 경로를 미디어렐의 영업보고서만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미함.

□ 따라서 지상파 미디어렐의 심사항목을 그대로 전용한 현재 심사항목의 세부심사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평가 기준 및 검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1) 방송광고 판매계획의 공익성·공정성 이행 실적 및 계획

20점으로 가장 많은 배점을 차지하는 이 심사항목에서는 종편 미디어렐의 불법·편법 영업을 방지할 내부 장치- 금지행위 위반 방지를 위한 내부지침, 업무절차, 모니터링 체계, 교육 계획, 이용약관 반영내역 등 -를 점검함. 그러나 사실상 미디어 렐의 ‘자율규제’에 가까운 이런 조치들은 절차의 존재 여부나 계획 수립에 대한 확인만으로 그 실효성을 확인하기 어려움. 구체적인 운영 실적을 보고받고 기존의 불법·편법 영업 사례에 대한 재발 방지 조치인지의 확인이 필요함.

### 2) 방송광고 판매대행 규모 등에 비추어 적절한 수준의 조직과 인력 운영 실적 및 계획

종편 미디어렐의 영업은 MBN의 사례처럼 미디어렐과 종편 방송사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수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JTBC의 <광고전략실>처럼 방송사와 미디어렐 간의 인력 배분 또한 가능한 구조임. 1사 1렐의 구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종편 미디어렐의 조직과 인력 운영 실적에 대한 심사는 모회사인 방송사의 광고 인력 구조와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

### 3) 방송광고판매대행사사업자의 재무상태 등 재정건전성

종편 미디어렐이 모회사인 방송사와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이 핵심임. 그럼에도 총점 100점 중 6점의 비중만을 갖는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움. 특히 이 심사항목은 계량항목으로 15점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4) 시정명령 및 과태료 횡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횡수

MBN 미디어렐 불법영업의 사례는 방통위로부터 2억 4,0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받았으나 현재의 심사기준에 따르면 1회에 해당하므로 10점 만점 중 “건당 1점”의 감점만을 적용받음. 더욱이 이어지는 심사항목에서는 “허가 당시 부과한 조건에 대한 이행 실적”이나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입법 취지에 따른 방송의 공공성·공익성·다양성 실현 이행 계획”은 가산점 항목임. 가산점 항목은 건별 평가가 아니라 심사위원의 판단에 따라 각각 최대 5점 씩 가산점을 줄 수 있는 “보너스 항목”이 될 수 있음. 사실상 신문광고 영업 방식에 더 익숙한 종편 미디어렐의 특성을 고려할 때, <건당 1점 감점 - 최대 5점 가점>이



라는 비대칭적 심사 항목은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됨.